

섹션 1557: 성차별을 금지하는 보호조치

섹션 1557은 Affordable Care Act(ACA, 부담적정보험법)의 공민권법 조항입니다. 섹션 1557은 인종, 피부색, 국적, 성별,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특정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상의 차별을 금지합니다. 섹션 1557 최종 규칙은 Medicare 환자를 받는 병원이나 Medicaid 지급금을 받는 의사, 건강 보험 마켓 플레이스 및 마켓 플레이스에 참여하는 보험 발행사,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(HHS, 보건복지부)가 자체로 실시하는 일체의 보건 프로그램 등 HHS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일체의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적용됩니다.

이 규칙은 섹션 1557에 따라 금지되는 성차별에 다음을 근거로 한 차별도 포함됨을 명시합니다.

- 개인의 성별
- 임신, 출산 및 이와 관련된 의료적 상태
- 성 정체성
- 성 고정관념

성차별을 금지하는 보호조치

- 어떤 개인도 성적 정체성, 성 고정관념을 포함한 성별을 근거로 의료 서비스나 건강 보장을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.
- 여성도 의료 서비스를 받고 보험을 획득함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.
- 성전환과 관련된 모든 의료 서비스 보장에 대한 단정적 배제나 제한은 외형적인 차별이다.
- 모든 개인은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해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. 하지만, 일반적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하나의 성별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경우, 제공자는 서비스를 추구하는 사람이 다른 성별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.
- 성별에 따라 제공되는 보건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해당 주체가 그러한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이 중요한 보건 또는 과학적 목표 달성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명백하게 타당한 사유를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.
- 최종 규칙안은 개인의 성적 지향성만을 근거로 한 차별이 섹션 1557에 따른 성차별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지만, OCR(시민권 사무국)은 개인의 성적 지향성 관련 차별에 대한 민원을 평가하여 섹션 1557에 따라 고정관념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. HHS는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정책의 일환으로 지지하며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진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.

섹션 1557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<http://www.hhs.gov/civil-rights/for-individuals/section-1557>을 참조하십시오.